

의안번호	2218307
의 퇴 인	김기표의원
회 답 일	2026.07.22.
추계번호	26C2066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2 신설 (대체인력의 배치 등)	유치원의 설립자·경영자는 교직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인력(이하 “대체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하여야 한다(제1항). 1. 관계 법령 및 해당 유치원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른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(결혼, 사망, 출산휴가, 모성보호휴가 등을 포함한다)를 사용하는 경우 2. 연수, 보수교육,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파견 또는 출장 등에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3. 「병역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5. 본인 및 가족의 질병·사고,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긴급지원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연계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(이하 “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의 구축·운영,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(제3항). 그 밖에 대체인력의 자격, 배치 기준, 지원 범위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(제4항)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조의2 신설 (대체인력의 배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유치원 대체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

- 현재 각 시·도교육청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¹⁾ 등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있음
 - 다만, 현행 「유아교육법」에는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별·설립 주체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함
 - 구체적으로, 일부 교육(지원)청은 대체인력풀 구축 및 수업 지원 교·강사 배치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, 그 외 지역은 개별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대체인력을 구인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
 - 또한, 국·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의 전입금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운용하는 반면,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보조받고 있어 설립 주체별로 재원 운용에 차이가 있음

□ (안 제20조의2제1항) 개정안 시행으로 현행 재량사항이던 대체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는 경우 인건비 등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, 현재 시·도교육청 단위의 대체인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교육부의 유치원교사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처우개선 목적의 지원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²⁾ 개정안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, 인건비 순증가분 등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종전에는 시·도교육청 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가 상이하였으나, 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 간 담당자 협의회 및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조치가 시행되어 현재 개정안에 명시된 모든 사유에 대해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음

1) 「유아교육법」

제23조(강사 등)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,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립·공립 유치원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, 사립유치원은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.

제26조(비용의 부담 등)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2) 교육부는 경북, 충북, 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대체인력풀 구축을 모든 시·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한편,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목적의 지원금(교부금)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임
교육부, 「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」 (2026.6)

- (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) 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이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,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간의 연계·통합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, 유치원은 교육시설에 해당하여 관리주체가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시·도교육청으로 상이함
 - 이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은 시·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, 유치원의 경우 각 시·도교육청이 대체인력 채용, 신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역시 이원화되어 있음
 - 개정안 시행으로 각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아 이를 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